



제416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국토교통위원회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390호)

2024. 7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제2201390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신공항건설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[안 별표 제2호(95) 신설]	2

I. 김도읍의원 대표발의(제2201390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도읍의원 등 19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7. 4.

다. 회 부 일 : 2024. 7. 5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·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, 토지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(안 별표 제2호(95) 신설).

3. 검토의견

가. 신공항건설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[안 별표 제2호 (95) 신설]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1. (생 략) 2.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 되는 사업 (1) ~ (94) (생 략) <u><신 설></u>	[별표]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 되는 사업 (1) ~ (94) (현행과 같음) <u>(95)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</u>

* 시행일: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
개정안은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(이하 “가덕도신공항법”이라 함)」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」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 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(95)에 신설하려는 것임.

현행 「토지보상법」 제4조1)에서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

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공익사업)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

1.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
2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·도로·공항·항만·주차장·공영차고지·화물터미널·궤도(軌道)·하천·제방·댐·운하·수도·하수도·하수종말처리·폐수처리·사방(砂防)·방풍(防風)·방화(防火)·방조(防潮)·방수(防水)·저수지·용수로·배수로·석유비축·송유·폐기물처리·전기·전기통신·방송·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시설·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광장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
4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·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

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,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²⁾.

현행 별표에서는 총 113개의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, 이 중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³⁾이 의제⁴⁾되는 사업은 총 94개임.

여기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,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,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⁵⁾를 거쳐 사
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, 교량, 전선로,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

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,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
8.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
2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의2(토지등의 수용·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
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3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
2. “공익사업”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3. ~ 6. (생략)

7. “사업인정”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0조(사업인정)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.

4)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 개별법상 인·허가 등(지구·구역지정, 개발계획승인 등)이 있는 경우 이 법상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.

5)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익성 검토기준은 ① 법령상 전제(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및

업인정 여부를 결정함.

2023년 「가덕도신공항법」⁶⁾ 개정·시행('23.4.18.)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(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(細目)을 포함하여) 수립·고시하는 경우에는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.

이와 관련하여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조의2⁷⁾를 고려할 때,

「토지보상법」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「가덕도

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,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), ② 시행자 의사와 능력(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,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), ③ 입법목적 부합성(법령목적, 상위계획·지침,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지, 영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·개방성이 있는지), ④ 공익 우월성(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), ⑤ 사업계획의 합리성(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지), ⑥ 수용 필요성(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,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), ⑦ 공익 지속성(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지) 등임.

6)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

제8조의2(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(생략)

7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의2(토지등의 수용·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
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신공항법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.

참고로, 현행 별표 제2호(9)에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,

‘실시계획’의 승인·고시 시점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「공항시설법」⁸⁾과는 달리, 「가덕도신공항법」은 그보다 앞서 ‘기본계획’을 수립·고시하는 때에 사업인정을 의제함으로써 보상절차를 앞당기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임.

【 「가덕도신공항법」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비교 】



자료: 국토교통부

8) 「공항시설법」

제12조(토지등의 수용)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토지·물건 또는 권리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문 의 처
02)6788-5581